

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·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

(박주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16.

발의의원 : 박주용 의원,

최재규 의원, 신달호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당뇨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, 소아·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에서의 따돌림을 비롯하여 성장기에 인격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. 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·청소년 당뇨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,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
나.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·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소아·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”(이하 “환자”라 한다)란 영·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
2.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원 또는 재학하는 사람
 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 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소아·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(이하 “소아·청소년 당뇨병”이라 한다)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소아·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아·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
2. 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
3. 그 밖에 소아·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소아·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소아·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
2. 소아·청소년 당뇨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
3. 소아·청소년 당뇨 환자 조기발견 사업
4. 그 밖에 소아·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영유아보육법(법률)」(2024.1.23. 일부개정, 2024.7.24. 시행)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3.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
□ 「유아교육법(법률)」(2023.9.27. 일부개정·시행)

제7조(유치원의 구분)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2.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)
3.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
□ 「초·중등교육법(법률)」(2023.10.24. 일부개정, 2024.4.25. 시행)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